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9.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6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6.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1)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
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
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감면내용

-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
을 적용한다.
- 3) 감면 동의안 구의회 의결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동의안은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지방세 감면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자에게 재산세 건축물분은 기존 4%에서 0.25%를 적용하고 토지분에 대하여는 4%에서 0.4%를 적용하도록 감면하려는 것임.
- 기존에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2021.6.8.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어 감면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음.
- 본 동의안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4호의 고급 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69개 업장에 대하여 건물분 및 토지분 각각 69건씩 총 138건에 11억의 감면이 예상됨.

〈감면 규모 추계〉

구 분	계	건 물	토 지	비고
서울경감		4%→0.25%	4%→0.4%	
감면건수 (건)	138	69	69	
감면액 (백만원)	1,100	150	950	

- 다만, 본 재산세 감면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납세의무자인 건물주로 해당업소의 사업자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산세 감면의 효과가 집합

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검토 결과

- 본 동의안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피해발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 장기간 영업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은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지방세 납세의무자와 실제 사업자의 차이로 감면의 효과가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 346 호
----------	---------

제출년월일 : 2021.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나. 감면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감면 동의안 구의회 의결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